군산시 공고 제2026-253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 개정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2. 주요내용

○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총 계	**1,683**
정무직 계	**1**
시장	1
일반직 계	**1,644**
3급	1
4급	10
5급	82
6급이하 계	1,551
전문경력관 계	**5**
별정직 계	**4**
6급이하 계	4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8**
지도관	2
지도사	26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총 계	**1,683**
정무직 계	**1**
시장	1
일반직 계	**1,644**
3급	1
4급	11
5급	85
6급이하 계	1,547
전문경력관 계	**5**
별정직 계	**4**
6급이하 계	4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8**
지도관	2
지도사	26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12.(목) ~ 2026. 11. 23.(월) / 11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702, FAX : 063)454-6006, 전자우편 : dof1303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급간 조정 사항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2026. 12.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83**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644**	-				
3급	1	1				
4급	11	8	1	2		
5급	85	46	3	8	1	27
6급이하 계	1,547	-				
전문경력관 계	**5**	-				
별정직 계	**4**	-				
6급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83**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644**	-				
3급	1	1				
4급	10	7	1	2		
5급	82	43	3	8	1	27
6급이하 계	1,551	-				
전문경력관계	**5**	-				
별정직 계	**4**	-				
6급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83**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644**	-				
3급	1	1				
4급	11	8	1	2		
5급	85	46	3	8	1	27
6급이하 계	1,547	-				
전문경력관계	**5**	-				
별정직 계	**4**	-				
6급이하 계	4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3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본 조례 개정으로 국·과 설치로 인한 총정원 1,683명 內 변동 (4급 +1명, 5급 +3명, 6급이하 △4명)
- 4급 및 5급 기구설치에 따라, 해당 직급 연봉·성과연봉 A등급 적용
- “연봉·성과연봉” 은 본봉,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 포함
- 비용추계는 2026년 대비 공무원급여 인상률 3.9% 적용

나. 2027년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원)

구분		연간 총소요액(1인)	구분		연간 총소요액(1인)
총계		128,002,000	총계		105,777,000
4급	- 연봉·성과연봉	: 114,104,000	5급	- 연봉·성과연봉	: 97,120,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직급보조비	: 4,800,000		- 직급보조비	: 3,000,000
	- 직책급	: 4,200,000		- 직책급	: 1,200,000
	- 연가보상비	: 2,978,000		- 연가보상비	: 2,537,000

6급	연간 총소요액(1인) : 91,436,850			
	- 본봉(25호봉)	: 58,380,000	- 대우공무원수당	: 2,394,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대민활동비	: 600,000
	- 직급보조비	: 2,220,000	- 명절휴가비	: 5,838,000
	- 정근수당	: 4,865,000	- 시간외수당 금년금액 기준/50시간	: 8,215,200
	- 연가보상비	: 2,092,000	- 성과상여금 금년금액 기준/A등급	: 4,912,650

	4급기구(+1)	5급기구(+3)	6급기구(-4)

인건비	128,002,000	317,331,000	-365,747,400
연금부담금 등	30,808,000	78,667,200	-63,050,400
합계	158,810,000	395,998,200	-428,797,800

⇒ 2027년 비용추계 126,010,4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기구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은 자체 재원을 통해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현숙
연락처	(063) 454-22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인 건 비		79,585	82,689	85,914	89,264	92,746	430,200
연금부담금 등		46,424	48,235	50,116	52,071	54,101	250,949
재원 조달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자체 수입	소 계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지방세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2027년~2031년까지 평균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3.9% 정도 적용

군산시 공고 제2026-2539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 규정
- 국 소관, 과·분장사무·명칭 등 변경사항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국 소관, 과·분장사무·명칭)

○ 현행기구 대비, 1국 3과 6팀 증가

【현 행】4담당관 9국·소 49과 27읍면동 302계

【개정안】**3담당관 10국·소 53과 27읍면동 308팀**

구 분		현행	개정안
본청	담당관	새만금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	현대차투자지원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국	기획행정국,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교통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	기획조정국, 새만금경제항만국, 문화관광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복지돌봄국, 기후해양국, 자치행정국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현행유지
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현행유지
읍면동		옥구읍 외 26읍면동	현행유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12.(목) ~ 2026. 11. 23.(월) / 11일간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702, FAX : 063)454-6006, 전자우편 : dofl303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등)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 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 새만금경

제항만국, 문화관광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복지돌봄국, 기후해양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밑에 현대차투자지원관, 소통담당관,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정책과, 예산법무과, 교육협력과, 인구청년정책과, 디지털전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전략기획 수립 및 정책개발
2. 예산 편성·투자심사
3. 지역교육 및 시민 평생교육 전반
4.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5. 디지털전환 행정서비스 발굴·개발 및 지역정보화·통신

제6조(새만금경제항만국에 두는 과) ① 새만금경제항만국에 전략산업투자과, 기업일자리과, 미래에너지과, 새만금항만과, 민생경제과를 둔다.

② 새만금경제항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투자유치
2. 기업 일자리 및 기업 지원
3.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육성
4. 새만금개발 및 항만·물류 정책

5. 민생경제 및 사회적경제·상권·전통시장 육성

제7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문화유산과, 도서관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마케팅 및 관광시설 관리

2. 문화정책 및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3. 스포츠정책,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4. 국가유산 지정·보호·관리 및 근대역사박물관 관리·운영

5.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제8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재난예방과, 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관리정책 총괄·재난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

2. 재해예방 사업

3. 교통정책 총괄·교통시설 및 교통지도

4. 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

5. 도로정비·보수 및 유지관리

제9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경관과, 도시정원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책 및 개발·재생
2. 주택건설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3. 도시경관 사업 및 건축허가·신고
4. 도시숲 및 가로녹지 조성
5. 상수도행정 종합계획수립 및 상수도시설 관리
6. 하수행정 및 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관리

제10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 경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정책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복지통합 조사 및 관리
2. 경로복지 및 장사업무
3. 장애인복지
4. 아동정책, 아동보호, 보육정책 및 지원
5. 성평등정책,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지원

제11조(기후해양국에 두는 과) ① 기후해양국에 기후환경정책과, 생태산림과, 자원순환과, 해양정책과,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둔다.

② 기후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대응정책 총괄 및 환경관리
2. 생태 및 산림 보호·관리
3. 해양정책 및 해양자원 개발

4. 어업정책 및 어업자원 전반

5. 수산업·수산식품 육성 및 진흥

제12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열린민원과, 지적민원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리후생, 인사관리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 제외) 지출,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3. 지방세의 부과

4. 지방세의 징수

5. 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6. 지적민원· 지적공부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 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에 따라 의료 취약지

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보건진료소장 등) 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개정면에 둔다.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수립 및 농업지원
2. 농식품유통
3. 농업인교육, 귀농귀촌활성화, 농촌공간정비
4. 식량·원예·작물 등 기술보급
5. 동물정책·방역 및 축산환경 관련 업무

제20조(농민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21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

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련 및 제증명 발급
2.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의무보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무보험 차량 운행 관련 특별사법 경찰 수사
4.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5. '자동차관리업' 관련 업무
6. 건설기계 주기장
7. 차량세무민원

제5장 하부 행정기관(읍면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의 신설·변경에 따른 국·담당관·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담당관·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과 담당관·과·소장에 대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행정국·안전건설국·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장”을 “기획조정국·새만금경제항만국·안전교통국·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②「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1호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을 “군산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으로, 제2호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디지털전환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를 “실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로 한다.

③「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에서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⑤「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기획행정국장”은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⑥「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기획행정국장”은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교통국장,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⑦「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관광국장”을 “기획조정국장, 새만금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⑧「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을 “기획조정국장, 새만금경제항만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기획조정국장”,“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⑩「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교통항만수산국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행정과장,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안전교통국장, 경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교통과장,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⑪「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 괄호 안의 “교통항만수산국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경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안전교통국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과장, 건축경관과장, 경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⑫「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복지돌봄국장” 및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⑬「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제1호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조정국장, 새만금경제항만국장, 문화관광

국장, 복지돌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⑭「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⑯「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⑰「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교통항만수산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⑱「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기후환경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을 “도시주택국장·기후해양국장” 으로 한다.

⑲「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⑳「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인구대응담당관”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제13조 제1항 제1호 “인구대응담당관”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㉑「군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은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을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㉒「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㉓「군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㉔「군산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토지정보과장”을 “지적민원과장”으로 하고, 제17조 제3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디지털전환과장”으로 한다.

㉕「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㉖「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㉗「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㉘「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㉙「군산시 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디지털전환과장”이 된다.

㉚「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기획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㉛「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경제산업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신성장산업과장”을 “전략산업투자과장”으로 한다.

㉜「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㉝「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경제산업국장”을 “새만금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㉞「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교통항만수산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㉟「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하고, 제3항 “경로장애인과장”을 “경로복지과장”으로 한다.

㊱「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㊲「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2항 “기후환경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기후환경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㊳「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기후환경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㊴「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일자리경제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㊵「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기업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㊶「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기업지원과장”을 “전략산업투자과장”으로 한다.

㊷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㊸ 「군산시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㊹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박물관관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㊺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박물관관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㊻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경로장애인과장”을 “경로복지과장”으로 한다.

㊼ 「군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기후환경과장”을 “생태산림과장”으로 한다.

㊽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먹거리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㊾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 “먹거리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㊿ 「군산시 농산물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먹거리정책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6. 12. .>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3조제3항 관련)

1. 보 건 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 일원

2. 건강생활지원센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군산시 설림5길 83(소룡동)	소룡동 · 미성동 일원

3.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237	서수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6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4-11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서면 일원

4.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 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 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	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 하금암,상금암
대 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 신광
대 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	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 신촌,상리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	산북동 24,25,26,27통(옥성,신창, 금성,평화),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	비안도,두리도
상장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길 16-3	상장곤,하장곤,원용귀,신중용귀,운원
성 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50-3	성덕,항동,요동,상흥
신 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	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 구율,원풍촌,풍촌1구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	신시도, 무녀도
연 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2길 5-2	연도
우 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7	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 가산,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985	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 서지,와촌,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	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창 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	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 산남,작촌,구작
술 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43	하전,중전,상전,양주,금산, 상주,서황,중갈,상갈,하갈

[별표 2] <개정 2026. 1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구영2길 39 (영화동)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3조, 제4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본 조례 개정으로 국·과 설치로 인한 총정원 1,683명 內 변동 (4급 +1명, 5급 +3명, 6급이하 △4명)
- 4급 및 5급 기구설치에 따라, 해당 직급 연봉·성과연봉 A등급 적용
- "연봉·성과연봉" 은 본봉,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 포함
- 비용추계는 2026년 대비 공무원급여 인상률 3.9% 적용

나. 2027년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원)

구분		연간 총소요액(1인)	구분		연간 총소요액(1인)
총계		128,002,000	총계		105,777,000
4급	- 연봉·성과연봉	: 114,104,000	5급	- 연봉·성과연봉	: 97,120,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직급보조비	: 4,800,000		- 직급보조비	: 3,000,000
	- 직책급	: 4,200,000		- 직책급	: 1,200,000
	- 연가보상비	: 2,978,000		- 연가보상비	: 2,537,000

6급	연간 총소요액(1인) : 91,436,850			
	- 본봉(25호봉)	: 58,380,000	- 대우공무원수당	: 2,394,000
	- 정액급식비	: 1,920,000	- 대민활동비	: 600,000
	- 직급보조비	: 2,220,000	- 명절휴가비	: 5,838,000
	- 정근수당	: 4,865,000	- 시간외수당 금년금액 기준/50시간	: 8,215,200
	- 연가보상비	: 2,092,000	- 성과상여금 금년금액 기준/A등급	: 4,912,650

	4급기구(+1)	5급기구(+3)	6급기구(-4)
인건비	128,002,000	317,331,000	-365,747,400
연금부담금 등	30,808,000	78,667,200	-63,050,400
합계	158,810,000	395,998,200	-428,797,800

⇒ 2027년 비용추계 126,010,4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기구 변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은 자체 재원을 통해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현숙
연락처	(063) 454-22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인 건 비		79,585	82,689	85,914	89,264	92,746	430,200
연금부담금 등		46,424	48,235	50,116	52,071	54,101	250,949
재원 조달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자체 수입	소 계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지방세	126,010	130,924	136,030	141,336	146,848	681,15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2027년~2031년까지 평균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3.9% 정도 적용